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국가보위비상 대책위원회는 작년 10월26일 박 정희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 이후 누적되어온 정치적·사회적 불안과 금년 봄부터 확대 악화되어 온 학생소요와 노사분규, 그리고 특히 나라의 존립 마지 위태롭게 했던 광주사태 등에 대처하여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국가보위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소요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계엄당국과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치되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 계엄업무를 효과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 국가보위를 위한 중요 국책(國策)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계엄법 제 9조(계엄실시에 관한 지휘 감독), 동법 제11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동법 제12조(계엄지역내의 행정, 사법기관지휘감독권)와 정부조직법 제 5조(자문기관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계엄법 제 9조에 의하면 전국비상계엄이 선포 되었을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와 제12조에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동안 크게 신장하고 사회의 모든 기능도 고도로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계엄군에 의한 행정 및 사법사무의 효과적인 지휘 감독이 사실상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안보·관계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지휘관들로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 계엄사항과 국가보위에 관한 국책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만 소집되는 비상설 자문기�이며, 평소에는 이를 위임받은 상임위원회가 행정부처 및 사법기관 사무의 기획 및 집행과 조정,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대민업무에 있어서 부당한 처리 저연이나 부정 및 정설개재 등 각종 민원(民怨) 요소가 있다면 상임위원회 산하의 소관 분과위원회가 해당행정 및 사법기관과의 협조와 조정을 통해 이를 시정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질서유지와 국토방위 임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여 행정, 사법사무에 관한 지휘는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계엄업무의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검토, 시행하게 된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동 위원회가 계엄법과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구성된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상의 군정」 또는 「5·16직후의 최고회의 재판」 등의 허황된 억측이나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군과, 정부, 군과 국민을 이간시키려는 저의에서 연유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 내란, 폭동, 파괴적인 군중 시위 등 혼란이 일어났을 때 현정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 보루로서 이를 제압, 수습할 책임을 군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였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헌법 제54조).

이 규정에 따라 계엄법 제11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 계엄군은 치안유지와 국토방위임무에만 전념해 왔고 일반행정 및 사법 업무의 처리는 사실상 행정각부와 사법부에 위임하고 군이 관여하는 것을 가능한 한 자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치안유지 위주의 계엄운영이 이번의 대규모 학원소요와 사북(舍北) 난동사태, 그리고 광주 소요사태와 같은 국가안녕질서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는 중대사태에 대처, 그 실효를 기하지 못 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질서확립을 위해서 계엄군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여론이 각계 각층에서 높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문제학생들의 계엄해제 주장과는 달리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국가보위의 신성하고도 엄숙한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왜 설치 되었는가』 문화공보부)